

디지털 관련 사회문제와 탐정의 역할

허명범*, 김권호*,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A Study on Private Investigator's Role against Digital Related Social Problems

Hur Myung Bum*, Kim Kwon Ho*, Yeom Keon Ryeong**

Senior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Criminology*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요약 현대사회는 디지털 사회로 불릴 정도로 인터넷과 무선 네트워크망, 디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한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금융거래나 정보의 이동, 상업활동 대부분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이뤄지면서,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부작용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산업스파이 활동이나 산업기술 유출이 있으며, 온라인을 이용한 마약 등의 불법 재화 거래, 온라인 도박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사회문제를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사법기관의 활동과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이제는 탐정시장이 개방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이용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사회문제 및 범죄문제와 관련하여 탐정의 조사능력 및 증거수집능력을 적극적으로 배양해야 하며, 각 탐정교육기관이나 협회들이 이에 대한 투자와 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주제어 탐정, 탐정산업, 산업스파이, 디지털 사회, 디지털 사회문제

Abstract Modern society is operated based on the internet, wireless networks, and digital devices to the extent that it is called a digital society. In particular, as most of financial transactions, information movement, and commercial activities are based online, various social problems and side effects related to this are increasing rapidly. Representative examples include industrial espionage activities and leakage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social problems such as illegal goods trade such as drugs using online and online gambling are increasing to a serious level. These digital-based social problems cannot be solved only by the activities and capabilities of judicial institutions such as police and prosecutors. Now that the private investigation market is open, active intervention using them is necessar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ultivate private investigator's ability to investigate and collect evidence in relation to digital social and criminal problems. In addition, each private investigation education institution or association should actively invest and research this.

Key Words Slow private investigator, Private investigation industry, Industrial espionage, Digital society, Digital social problem

Received 27 Sep 2023 Revised 12 Oct 2023
Accepted 18 Oct 2023
Corresponding Author: Yeom Keon Ryeong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Email: kicl2001@naver.com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우리나라는 국가경찰 및 중앙집권적 검찰을 기반으로 한 사법제도와 수사시스템을 구축하여 70여 년의 기간 동안 운영해왔는데, 이는 종전(終戰) 후 군사적 대치상황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일본은 독일의 대륙법계 사법제도와 경찰체제를 도입하여 우리나라에 그대로 이식하였고, 이는 해방 이후에 그대로 지속되었다.

한국전쟁이 종결되지 않은 휴전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가 벌어지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사법제도와 경찰제도 등은 좀처럼 자리를 잡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은 미군정치의 통제 하에서 분권형 사법제도를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기존의 흥신소(興信所)를 기반으로 하던 탐정제도가 고스란히 유지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탐정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법기관들의 입장 고수와 금융권의 채권추심 업무를 탐정들이 불법적으로 하는 것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탐정업 자체를 금지하도록 입법하여 국내에서는 탐정업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

반면에 선진국들은 탐정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거나, 자발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을 펼쳤고, 우리나라의 탐정산업은 타 선진국과 비교하여 발전이 극도로 뒤처지게 되었다. 이에 대한 여러 기관이나 단체들의 다양한 주장과 의견이 있었음에도 체계성 있는 발전전략의 수립이나 전문성 증대를 위한 방안들이 나오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것이다.

다행히 2020년도부터 국제청이 탐정업을 서비스업의 하나로 보고 자유신고업종 형태로 인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온전한 탐정제도의 구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2023년 6월을 기준으로 100여 개 이상의 탐정 관련 협회와 자격증 발급기관이 경찰청의 승인을 받아 활동 중인 상태이고, 2만 명 이상의 민간자격 탐정이 사회로 배출된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이와 관련한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본 토론주제는 ‘디지털 시대와 탐정의 역할’로서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IT(Information Technology) 관련 기술이 발전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 탐정이 공익적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탐정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립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의뢰인의 사건내용을 조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조사가 많아질 것이며, 개인이 저지르는 각종 사회문제와 비행, 비리, 범죄 역시도 디지털 기술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탐정의 역할을 연구를 통해 모색하고자 한다.

2. 탐정의 개념과 관련 정의

2.1 탐정의 일반적 정의

탐정은 이전에 ‘민간조사원’이라고 불렸으며, 이에 따라 ‘탐정조사활동’은 ‘민간조사활동’라고 지칭되었다. 이때 민간조사는 공적이 아닌 사적인 영역에서 계약 당사자가 상호 간 협의에 따라 구두계약 혹은 서면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인(의뢰인)의 의뢰와 관련성을 갖는 사실관계 및 그에 따른 관련 정보·자료 등을 추적·조사 및 수집하는 과정을 거쳐 고용인(의뢰인)에게 해당 내용에 대하여 제공하는 일련의 업무행위라고 정의된다(허명범, 2022)[1].

즉 검찰 및 경찰 같은 정부 수사기관 등이 수사의 행위 주체가 아닌 민간·개인 등이 사건·사고에 대하여 사적으로 의뢰를 받고 임금·보수 등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의뢰에 대한 조사업무를 행하는 제도를 ‘민간조사제도’라고 부른다. 민간조사는 국가별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거나 어느 정도의 유사한 특성 역시 함께 관찰되었다. 영미국가에서는 탐정을 ‘Private Investigation’이라고 하며, 일본은 ‘탐정’, 독일의 경우 ‘신용조사·탐정업’이라고 표현한다(이준복, 2017)[2].

2.2 조사업무의 성격을 기반으로 한 정의

학자들이 민간조사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황정익 외(2005)[3]는 “정부 수사기관

의 수사업무 혹은 조사업무와 유사한 영역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임금을 받고 민간·개인의 신분으로 수사업무 또는 조사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직업”, 정일석(2008)[4]은 “개인 또는 업체가 사적인 자격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의뢰·수사 요청받은 사건·사고를 조사·추적하는 것”, 손상철(2011)[5]은 “의뢰인(고용인)에게서 사건·사고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적법한 범위에서 조사업무를 통하여 고용인이 요구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제공하는 업무”라고 정의하였다.

2.3 계약관계를 기반으로 한 정의

조성구·김태민(2012)[6]은 “민간분야에서 계약에 의한 피고용인과 고용인 관계에서 임금을 받고 고용인이 의뢰한 사항의 사실관계에 대해 탐색하고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여 고용인에게 설명하는 행위”, 강승훈·이상원(2014)[7]은 “다른 사람에게서 임금을 받고 개인 신분으로 의뢰 내용에 따른 사실과 관계된 상황을 탐색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활동”으로 의미를 정하였다.

2.4 조사자의 신분을 기반으로 한 정의

탐정에 대해 ‘민간인에 의한 조사’를 기반으로 설명하는 학자가 있는데 해당 학자 중 조성구는 “민간조사란 민간인이 수사에 있어 기본적 주체가 되고 수익성을 위해 비교적 공권력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범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치안에 대한 수요를 확실히 보증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가진 권리에 대한 보호 등 범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김원중은 “민간조사란 공적기관이나 공직자가 아닌 사적 신분인 업체 또는 개인이 수사의 주체가 되어 사적인 자격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의뢰·요청받은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추적하는 제도이다”라고 정의하였다(노진거·김일곤, 2021)[8].

2.5 일본의 탐정에 대한 정의

일본의 경우 ‘탐정업의 업무 적정화에 관한 법률

(탐정업법)’ 제2조 제1항에서 ‘탐정업무’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의뢰인(고용인)의 의뢰·요청을 받아 특정 인물의 소재 및 행위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탐문, 미행과 잠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해당 결과를 의뢰인에게 알리는 업무’라고 정의하였다(김계원·서진석, 2016)[9].

3. 산업기술 유출과 탐정의 역할

3.1 산업기술 유출 실태

우리나라는 국가핵심기술을 12개 분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이 안에는 첨단기술, 인증산업 관련 신기술, 환경 관련 신기술, 보건 관련 신기술, 건설기술, 핵심뿌리기술 등이 포함된다. 약 4,000여 개의 관련 기술들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기업이 공개하지 않는 다수의 핵심기술도 존재한다(김권호, 2022)[10].

이러한 핵심기술의 대표적인 예로 반도체 개발 및 소재 관련 기술, 5G와 6G를 기반으로 하는 무선 통신기술,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기술, 자동차 개발 및 핵심부품 관련 기술, 전기차 및 충전과 배터리 관련 기술, 환경오염 방제 및 예방 관련 기술 등이 있으며, 세계적으로 한류 붐을 타고 다양한 영역의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 기술 및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기술 등도 해당한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영역들이 많아지면서 세계 1위 기술 또는 수준급 기술을 탈취하려는 시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있어서 우수한 기술개발 인력을 빼앗아 가거나 기술을 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국가정책의 강화는 물론 해당 분야를 전공한 인력들을 활용하여 산업기술 유출에 대응하는 전문탐정을 양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2 탈취의 방법과 심각성

기존의 산업기술 유출은 해킹이나 스파이웨어 이식을 통한 온라인 탈취가 많았다. 그러나 기술개발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온라인 보안에 대한 많은 투자를 통해 이를 막는 방법들을 적용하면서, 이제 는 개발인력을 빼내거나 내부자가 기술 관련 자료를 외부로 빼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염건령 외, 2022)[11]. 퇴직자 또는 재직자를 매수하는 방식의 인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산업 기술유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적 유출에 대해서 탐정업계를 통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표 1> 산업기술 유출 패턴

*최근 6년간('15~'20)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판결문(43건) 기준

유출자	퇴직 인력 (회사직전, 현직 포함)	협력업체 직원	현직 직원	경쟁업체 직원	외국인
명	23	10	8	7	2

유출수단	외부이동 저장장치	EMAIL	노트북	서버 해킹	출력물 취	사진 촬영	기타 (양자 등)
명	18	12	8	4	4	3	1

출처: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2021. 12. 22).

<표 1>의 2021년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산업기술 유출로 인해 재판을 받은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사례가 퇴사 직전의 현직 임직원을 포함한 퇴직 인력에 의한 경우이다.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23명의 유출범들이 퇴직 인력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인적 산업기술유출 사건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국무총리실, 2021)[12].

그런데 문제는 회사 내부 감사실이나 감사인력으로 이들에 의한 기술 탈취행위를 감시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내부 인력만으로 위법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나 증거 등을 확보하려면 여러 제약이 따르고,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3.3 산업기술유출사건의 미신고 및 비보고 문제

산업기술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대두되는 문제점은 그 내용을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 관리감독기관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술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민간기업이나 연구소 등에서 개발하는 기술의 유출 사실이나 과정, 피해 내용 등은 체계적인 보고 시스템이 부재하여 국가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표 2>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2016년~2021년 6월)

구분	'16	'17	'18	'19	'20	'21 (1~6월)	합계
산업기술	25	24	20	14	17	11	111
(국가핵심기술)	(8)	(3)	(5)	(5)	(9)	(5)	(35)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기기 (자동차 등)	전기전자 (의약품 등)	조선	자동차	정보통신	생명공학	기타	합계
14	17	27	14	8	8	4	19	111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기타(대학, 연구소)	합계
36	66	9	111

출처: 국가정보원(2021).

<표 3> 산업기술사범 사범처리 현황

*형사사건 평균기소율('17년 약 33%, '18년 약 31%, '19년 약 29%)

건수	인원	처리내역(명)					형의없음
		구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구약식 (벌금)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100	280	34	106	3	9	1	127

실행	집행유예	벌금	무죄	기타(형소 기각결정)
9	41	15	29	5

출처: 최근 6년간(2015~2020) 산업기술보호법위반 판결문 43건 기준(단위: 명)

기소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2016년~2021년 6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기소율은 5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법원의 판결현황을 보면, 집행유예가 41.4%로 가장 많으며 실행은 9.1%에 불과하고 무죄는 29.3%로 높은 수준임이 확인된다. 이는 산업기술 유출관련 사범처리 수준이 낮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산업기술 유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연구소 등은 해당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아주 다양하지만 가장 많은 사유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출된 기술이 사전에 공개되는 문제를 미리 막기 위해서 신고를 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이다. 둘째, 내부자의 소행이라는 점이 기

업이나 연구소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을 우려하여 피해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이다. 셋째, 기업가치의 하락이나 투자자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알리지 않는 경우이다. 넷째, 유출자가 다른 협박내용을 가지고 해당 기업이나 조직과 협상을 하는 경우이다.

3.4 산업기술 유출 대응을 위한 탐정업의 방향

우선적으로 산업기술유출이나 산업스파이에 관련된 업무만을 집중할 수 있는 전문탐정의 교육과정 운영이 시급하다. 현재 대부분의 탐정 관련 교육기관들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초적인 교육만을 하고 있으며, 경찰청이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별도의 고등자격, 전문자격과정 운영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는 상황이다(김용현, 2022)[13].

더욱이 탐정자격 취득과정에 대한 교과목이나 과정 운영의 표준안도 없는 상황에서 고도의 숙련된 조사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기술유출 전문탐정의 양성은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이제는 산업기술유출만을 전담하는 탐정업자, 탐정법인의 육성을 위한 관련 부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탐정업계나 학계도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탐정 양성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특히,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산업부 등의 산업기술보안 관련 퇴직 전문인력들을 대거 탐정 분야로 유도하여, 산업기술 유출사건의 조사 및 전문인력 양성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디지털 명예훼손 및 혐오행위 대응

4.1 디지털 명예훼손과 혐오행위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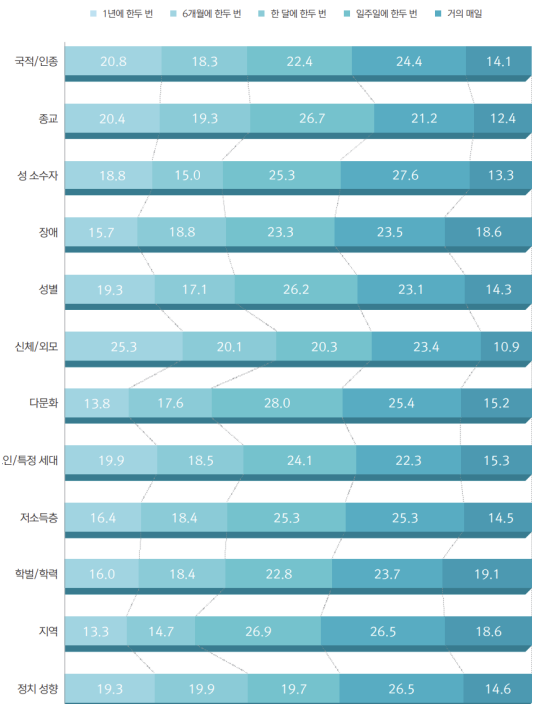
디지털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이버나 온라인, SNS 등을 통해서 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통용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처벌하는 범죄이다(함혜현, 2020)[14].

아울러 특정 집단이나 개인적 특성을 대상으로

혐오적 표현을 온라인상에 게재하거나 폭력적인 글이나 사진 등을 보내는 경우를 디지털 혐오(Digital Hate)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인격과 명예를 훼손시키는 온라인상의 공격행위는 비대면성과 익명성에 기인하는데, 공격대상자인 상대방을 면전(面前)에서 공격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가혹하고 잔인하게 진행된다.

이러한 온라인상의 디지털 공격행위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처벌되기도 하지만, 정확한 피해내용의 파악이 어렵고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지 못하거나 너무 다수가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인해 피해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방송통신위원회, 2021)[15].

최근에 사이버보안이나 네트워킹, 프로그래밍 등을 전공한 전문탐정들이 나와서 이러한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피해자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전문탐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림 1] 청소년의 디지털 혐오 유형별 분포빈도(단위: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21).

4.2 디지털 명예훼손과 혐오행위에 대한

탐정의 대응 확대

디지털 명예훼손과 혐오행위의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으며, 특히 사회적으로 많이 노출되는 연예인이나 셀럽, 정치인, 사회문화계 인사들이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 악의적으로 왜곡된 내용이 온라인을 타고 전파되면서 피해자들이 씻을 수 없는 명예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며, 결국에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익명성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디지털 세계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의 국가가 겪고 있는 사회문제이지만, 그 규모와 빈도, 확산성을 봤을 때 이를 수사기관의 단속이나 처벌에만 의존하기에는 실패가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사회적 대응 방안의 하나로서 탐정의 활동이 요구된다(염건령·박영수, 2021)[16].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범피피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 사례가 불법촬영물 유포에 의한 피해 처리과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유포된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영상물 등을 삭제하는 등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이 급방 소진되어 피해자 지원을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삭제 및 차단 업무를 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과 보상의 수준이 낮아서 이직률이 높고, 이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다양한 디지털 폭력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탐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역시 피해자들이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때문에 공익적 탐정 활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각 협회나 정부에서 일정 부분의 비용을 지원하는 탐정조사 복지프로그램의 도입에 대한 논의와 고민도 함께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5. 허위이력에 대한 조사 확대(개인

정보보호법의 부작용 보완)

5.1 개인정보보호법의 부작용과 사회적 피해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6930호, 공포일 2020.02.04, 시행일 2020.08.05.)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출과 유통, 사용 등을 사회적으로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며, 개인에 관한 인식정보와 민감정보, 이력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개인의 정체(正體)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력이나 근무경력,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어렵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허위학력이나 허위이력을 사용하는 자의 실체에 대해서 조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허위학력, 허위경력, 허위자격 등을 이용한 사기범죄가 많아지는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계각층에서 허위 내용 확인을 위한 예외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강력한 장벽이 이를 막고 있다.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새로 채용하는 인력의 이력이나 경력, 학력,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현실적 제약이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용하는 기업이나 사업주가 입고 있는 실정이다.

허위로 기재된 이력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법원은 사기죄의 적용을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형사적인 고소나 고발 등을 통해서 이뤄지는 사후적 조치이므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허위이력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허위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공한 것은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에 해당하며, 비록 행위자가 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임금 등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해 회사는 행위자의 근무경력 등에 대한 착오로 인해 행위자를 고용한 후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것

으로 본다. 따라서 행위자의 허위 이력서 제공 등의 기망행위와 입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고단8106 판결).

법원은 명확하게 허위의 사실을 이용한 취업이나 계약, 금전의 거래 등에 대해서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허위 이력 제시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에 예외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로 사회적 혼란을 치른 일본은 탐정업계에서 나서서 이와 관련한 업무영역을 새롭게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5.2 평판조사 활성화를 통한 허위이력 사용의 제어

일본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을 우회하여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탐정업계가 구성한 업무영역은 평판조사(評判調査)이다. 대부분의 일본 탐정업체들이 평판조사를 주요업무의 하나로 홍보하고 있으며, 상거래나 계약, 인력 채용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새롭게 데뷔하고자 하는 연예인 지방생의 사생활에 관한 평판조사, 결혼중개업체에 등록된 맞선 지원자에 대한 이력 관련 평판조사, 경력 채용 예정자에 대한 이전 근무관련 평판조사 등이 대표적이다(김영길, 2021)[17].

일본의 평판조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며, 조사대상자에 대한 관련 업계의 평판이나 신용 등에 대해 탐문형식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또한, 같은 학교 졸업자 등을 면담하여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한 조사나 업계 관계자와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 등도 이뤄지고 있다. 불법적인 목적으로 유력한 정치인에게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에 대한 평판조사 역시도 일본에서는 많이 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많은 탐정업자들이 평판조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기술과 노하우 축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홍보

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표준적인 업무기준이 없고 법률적 해석에 대한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김봉수·추봉조, 2019)[18]. 앞으로 우리 사회가 신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평판조회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조사업무의 표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경제범죄의 심화와 탐정의 역할

6.1 유사수신범죄

가장 먼저 탐정이 접근해야 하는 경제범죄 영역으로서 유사수신범죄를 들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유사수신범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체, 유사투자자문사 등을 설립하여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을 모두 모니터링하여 차단하거나 처벌하기에는 인력 등 정부기관의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추적, 고발 등의 역할에 탐정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탁희성, 2018)[19].

일부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는 탐정업체의 경우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피해자를 면담, 피해실태 조사하여 불법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사 등에 제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사후적으로 불법 업체에 의한 보복행위나 법률적 분쟁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호나 업계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6.2 보험범죄

탐정이 법률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오랫동안 탐정업무를 수행해온 집단이 각 보험사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SIU(Special Investigation Unit)이다. SIU는 보험범죄조사팀, 보험범죄조사과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보험범죄 전문탐정영역을 구성하여 수십 년간 유지하고 있다. 사실상 법적으로 탐정이 허용되기 전부터 존재한 몇 안 되는 합법적인 탐정조사집단이자 영역으로 볼 수 있

으며, 탐정업의 허용으로 인해서 더욱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구입이나 세금의 납부, 심지어 충전까지도 디지털로 이뤄지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보험범죄는 전형적인 디지털 사회의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매일 너무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고내용을 일일이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고 범죄공모여부에 대해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보험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SIU 외에도 전문탐정이 협업 관계 또는 외주 용역을 통해서 보험 관련 범죄의 해결을 위한 역할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강영숙, 2008)[20].

여행자 보험도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해외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 탐정 출신 협업탐정을 통해서 여행자 보험의 불법적 청구 여부를 조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보험가입자 전체의 손해를 줄이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보험의 재정적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6.3 온라인 도박범죄

온라인 도박은 이미 그 시장이 수조원으로 추정될 정도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불법적 영역이 되었다. 보이스피싱과 함께 경찰청 등에서 주요 경제 관련 범죄로 보고 있을 정도로 온라인 도박의 폐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불법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고, 불법 조직에 의해 피해를 보는 국민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이와 관련한 탐정 활동을 전문 영역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황요완, 2017)[21].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예산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극히 제한적인 예산으로 불법도박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인 비용적 보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조상현, 2019)[22].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이나 사법당국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탐정업계가 보완하도록 건

인하려면 결과에 상응하는 수준의 경제적 보상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불법행위의 조사와 고발을 하는 공익적 업종으로 탐정업을 인정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7. 결론

이상의 내용 이외에도 디지털 사회 속에서 탐정이 세밀한 조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해야 하는 부분은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제한적인 지면과 시간을 통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정책토론회의 특성상 이상의 내용만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향후 탐정의 제도화에 대해 더 전향적인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자정작용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탐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이미 많은 탐정업자, 탐정법인, 탐정협회, 탐정교육기관, 학술단체나 대학 등이 탐정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내놓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양상으로 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건전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의 제시라고 생각한다.

다만, 탐정업을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경호경비업의 형태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것은 반대하며, 탐정업자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관리·감독하고 자정노력을 하여 선진화된 탐정업의 모습을 갖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사료된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첨단기술과 금융기법 등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창의적 서비스업 개발을 통해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젊은 인구의 감소가 필연적인 시점에서 더 첨단화된 산업구조를 가져야만 현재의 선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탐정업은 창의적 서비스업으로서 미래 국가의 발전에 큰 밑알이 될 수 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리감독 당국이 보지 못하는 어두운 부분을 선제적으로 살피며, 궁극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확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의 잘못된 불법심부름

센터와 불법홍신소는 탐정업을 국가가 억누르는 작용에서 발생한 부작용이며,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서비스업에 버금가는 주요한 서비스산업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탐정업계는 '무슨 일이건 이제는 해도 된다'는 '무소불위'의 생각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탐정 서비스가 유익한지, 그리고 그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야 할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는 단순히 탐정 관리에 대한 법을 제정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그것을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허명범(2022). “탐정법제화에 있어서 부패범죄 방지를 위한 탐정의 전문성 제고 방안”,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이준복(2017). “민간조사(공인탐정)제도의 함의와 실효성에 관한 법/제도적 논의”, 경찰학연구, 제17권 제1호, 경찰대학교.
- [3] 황정익 외(2005). 공인조사(공인탐정)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05-01,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 [4] 정일석(2008). “민간경비 영역확장을 위한 민간조사제도 도입 방안”, 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손상철(2011). “민간조사제도의 규제방안과 소관부처에 관한 고찰”,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7권, 한국민간경비학회.
- [6] 조성구·김태민(2012). “민간조사업의 도입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33호, 한국경찰학회.
- [7] 강승훈·이상원(2014). “민간조사제도 법제화 추진에 따른 발전방향”,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3권 제4호, 한국민간경비학회.
- [8] 노진거·김일곤(2021).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쟁점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통권 제89호, 한국경찰학회.
- [9] 김계원·서진석(2016). “민간조사(탐정) 학과의 교과과정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통권62호, 한국공안행정학회.
- [10] 김권호(2022). “국내 산업스파이 유형에 따른 탐정의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이상수·염건령(2022). 탐정학개론, 서울: 대영문화사.
- [12] 국무총리실(2021), 제4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 [13] 김용현(2022). “국내 민간조사 연구의 실태와 개선 방안”, 문화와 융합, 제44권 제3호, 한국문화융합학회.
- [14] 함혜연(2020). “공인탐정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변호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9권, 제5호, 한국공안행정학회.
- [15] 방송통신위원회(2021).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16] 염건령·박영수(2021). “범죄수사에서 탐정의 공익적 보완 역할”, 한국경찰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경찰연구학회.
- [17] 김영길(2021). “탐정제도의 합리적 도입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8] 김봉수·추봉조(2019). “공인탐정 관련 법률(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시큐리티연구, 제61호, 한국경호경비학회.
- [19] 탁희성(2018). “민간조사제도 도입 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입법적 제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 [20] 강영숙(2008). “외국의 탐정제도와 한국의 공인탐정제도의 사회적 필요성 수사연구”, 통권 제210호, 수사연구사.
- [21] 황요완(2017). “공인탐정제도 도입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2] 조상현(2019). “공인탐정에 관한 인식 연구; 일반경비원 신입교육대상자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8권 제4호, 한국민간경비학회.

허 명 범 (Hur Myung Bum)



- 2022년 1월~현재: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2022년 1월~현재: 한국범죄학회 이사
- 2022년 3월~현재: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탐정학 박사과정 재학
- 관심분야: 탐정학, 행정학
- E-Mail: bumhur09@hanmail.net

김 권 호 (Kim Kwon Ho)



- 2022년 1월~현재: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2022년 1월~현재: 한국범죄학회 이사
- 2022년 3월~현재: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탐정학 박사과정 재학
- 관심분야: 탐정학, 행정학
- E-Mail: kwon1926@gmail.com

염 건 령 (Yeom Keon Ryeong)



- 2000년 08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경찰학)
- 2011년 08월: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교육학박사)
- 2022년 09월~현재: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탐정학)
- 2023년 09월~현재: 가톨릭대학교 부설 한국탐정학연구소 소장
- 관심분야: 행정학, 사회학, 통계
- E-Mail: kicl2001@naver.com